

	창의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위원회규정	제 정 일	2019.11. 1
		개정일	2022. 8. 1
		개정차수	1차
		담당부서	혁신지원단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혁신지원단 사업의 일환인 창의 메이커스페이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,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 본 운영위원회는 창의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조 (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부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부단장이 추천하여 단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은 동서울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창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(3D프린팅 존, IoT개발 존, 크리에이티브 존, 크래프트 존) 별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. (개정 2022. 8. 1)

제 3조 (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② 단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
제 4조 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· 의결한다.

1. 창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(3D프린팅 존, IoT개발 존, 크리에이티브 존, 크래프트 존)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련 사항 (개정 2022. 8. 1)
2. 창의 메이커스페이스 내 기자재 대여 및 공간대관 운영 관리 관련 사항
3. 창의 메이커스페이스 내 혁신지원사업의 성과관리 · 분석 및 환류, 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
4.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

제 5조 (회의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조 (회의록)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
제 7조 (사무관장) 운영위원회의 사무는 혁신지원단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